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(PM-2.5) 항목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초미세먼지(PM-2.5)로 변경하고,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,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$5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에 $4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전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미세먼지 (PM-10)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초미세먼지 (PM-2.5) ($\mu\text{g}/\text{m}^3$)	이산화 탄소 (ppm)	폼알데 하이드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총부유 세균 (CFU/ m^3)	일산화 탄소 (ppm)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	100 이하	50 이하 (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은 40 이하)	1,000 이하	100 이하	-	10 이하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	75 이하	35 이하		80 이하	800 이하	

다. 실내주차장	200 이하	-		100 이하	-	25 이하
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 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	200 이하	-	-	-	-	-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생활환경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98